

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89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5월 3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, 전문적이고,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나. 서울시에서는 금융위기 청년의 재도산 예방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금융취약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, 자립토대 지원금 지급 등 청년특화 자립토대 지원체계를 구축·강화하고자 함.
- 다. 이에 따라 「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」을 신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2023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고자 하며,
- 라.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복지재단
 - 소재지 :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
 - 규모 : 건물면적 967.12㎡, 건물연면적 10,830.25㎡

○ 관련 법령

- 법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조례 :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주요 사업

-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·연구
- 복지 분야의 평가·심사 및 인증
-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
-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·보급
- 사회서비스 품질관리
-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
- 저소득·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등

다. 추경 개요

- 추경 예산 : 168,000천원

※ 23년 총 출연금액 : 76,022,567원 (기정 출연금액 : 75,854,567천원 포함)

- 추경 필요성

-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 및 고금리로 청년층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금융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시의성 있고, 차별화된 정책지원이 필요함.
-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기 노력하는 청년 채무자의 재도산을 예방하고, 신속한 경제적 복귀 지원을 위해 금융취약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, 자립토대 지원금 지급 등 청년특화 자립토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○ 추경 예산 산출 근거

- 추경 요청액 : 168,000천원

▶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	168,000천원
·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	150,000천원
· 홍보비 및 교육자료 제작비 등	18,000천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박성찬 (☎ 2133-7315)